

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(안)

의안번호

192

제출년월일 : 1993. 9. 10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정이유

'91. 3. 8 폐기물관리법의 개정·시행으로 '93. 6. 3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가 제정·시행(부산직할시 조례 제3020호) 됨에 따라 종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행해 오던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자치구 자체의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,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제정취지

폐기물 관리법의 전문(全文)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가 종전 발생원(發生源) 중심에서 성상(性狀)에 의한 분류 체계로 개편되고, 일반 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처리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짐에 따라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, 처리의 대행과 수수료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지급 등 일반폐기물 처리 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, 처리의 대행 :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, 처리를 함에 있어 수집·운반은 수집·운반업자에게 처리는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조)
- 나. 수집·운반수수료 부과징수 :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·건물 등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집·운반수수료를 부과, 징수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조)
- 다. 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: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0조)
- 라. 과태료의 부과 : 일반폐기물의 무단 투기자, 종류·성상별 미분리 보관자, 조차·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2조)

4. 관련법령 :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

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, 처리의 대행) ①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,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수집·운반은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에게 처리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며, 대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행구역, 수집·운반 수거물량, 계약금액 및 기간 등
2. 수집·운반방법(차량 진입 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)
3. 수집·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
4.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
5.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
6. 대행업자 준수사항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③ 제 2 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실제 수집·운반량으로 하며 실제 수집·운반량을 측정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.

제 3 조(수수료 부과·징수) ① 법 제13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의 수집·운반에 관한 수수료는 [별표 1]의 기준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,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, 징수한다. 다만, 당해 소유자에게 부과,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, 징수할 수 있다.

②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기, 징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징수방법 등은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.
2. 제 1 호의 납기 중간에 새로운 부과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16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이하인 때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3.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어 과징하는 관리기간을 경과한 체납수수료는 구청장이 자체 징수한다.

제 4 조(수수료 납부의무 승계)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, 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제 5 조(수수료의 감면) 구청장은 다음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
2.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
3. 영구 임대주택 입주세대
4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 6 조(구역외의 수집·운반) 구청장은 관할구역 이외에서 배출자의 요구에 의거 일반폐기물을 수집·운반,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 7 조(자체수집·운반, 처리자 지정 등)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자체 수집·운반, 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아파트,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
2. 지역 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 단위별로 신청할 때
3. 동일 건물 내에서 서로 다른 배출자가 건물 단위로 신청할 때

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자체수집·운반, 처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 3 조에 규정한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체 수집·운반, 처리자가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
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자체수집·운반, 처리자 지정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8 조(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) ① 법 제1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,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 종류·보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9 조(보관시설 등 설치관리) ① 법 제1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 관

리하여야 한다.

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 여부,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설치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.

제10조(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) 구청장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) ① 구청장은 법, 영,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,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,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과태료의 부과) 과태료 부과는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[별표 2]와 같다.

제13조(수수료 등 징수절차)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부과,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징수절차 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14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 수수료(제3조 관련)

(단위: 원)

구 분	부 과 대 상	부 과 기 준	월 요 금	비 고
1 등 급	은행, 보험회사, 증권회사, 기업체(공장, 제조업)창고, 병원(의원), 극장, 예식장(사진관), 컨테이너 야적장, 목재소, 도매시장(가축시장, 청과물도매상) 및 이와 유사한 업소	660㎡초과 165㎡마다	1,580	
		건물면적 600㎡이상	9,770	
		“ 660㎡미만	7,080	
		“ 495㎡미만	5,520	
		“ 330㎡미만	3,930	
		“ 165㎡미만	2,370	
		“ 99㎡미만	1,260	
2 등 급	관공서, 학교, 공공시설, 교회, 사찰, 후생시설, 공공조합 및 이와 유사한 업소	660㎡초과 165㎡마다	430	
		건물면적 600㎡이상	2,390	
		“ 660㎡미만	1,830	
		“ 330㎡미만	1,260	
3 등 급	의료업소, 식품접객업소, 숙박업소, 유기장, 카바레, 욕탕, 이·미용업소, 약업소, 사설강습소(학원), 독서실, 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업소	330㎡초과 165㎡마다	3,830	
		건물면적 330㎡이상	11,490	
		“ 330㎡미만	7,650	
		“ 165㎡미만	4,080	
		“ 99㎡미만	2,550	
		“ 66㎡미만	1,660	
		“ 33㎡미만	900	
		“ 16.5㎡미만	510	
4 등 급	점포(시장점포 및 노점포함), 백화점, 슈퍼마켓, 연쇄점 ※단, 노점은 부지면적임	49.5㎡초과 16.5㎡마다	390	
		건물면적 49.5㎡이상	3,060	
		“ 49.5㎡미만	2,680	
		“ 33㎡미만	1,660	
		“ 16.5㎡미만	830	
		“ 9.9㎡미만	580	
		“ 6.6㎡미만	390	

(단위: 원)

구 분	부 과 대 상	부 과 기 준	월 요 금	비 고
5 등 급	세차장, 주차장, 주유소,	660㎡초과 330㎡마다	820	
	실외 체육시설, 하치장,	부지면적 660㎡이상	7,300	
	철재상, 고물 수집상, 브	“ 660㎡미만	4,860	
	록공장 및 이와 유사한	“ 330㎡미만	2,440	
	업소	“ 165㎡미만	1,080	
일 반 주 택	건물분 재산세 기준	100,000원 이상	4,200	일반폐기물 수집· 운반수수료 부과 당 시 재산세액(건물 분)이 없을 경우 앞 기분의 건물과표를 기준하여 재산세액 을 산출 부과한다.
		80,000-100,000원 미만	3,700	
		60,000- 80,000원 미만	3,200	
		50,000- 60,000원 미만	2,700	
		40,000- 50,000원 미만	2,200	
		30,000- 40,000원 미만	1,700	
		20,000- 30,000원 미만	1,200	
		10,000- 20,000원 미만	700	
		5,000- 10,000원 미만	350	
		2,500- 5,000원 미만	180	
		2,500원 미만	120	
	주민등록상 인구	1인당	80	

[별표 2]

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(제12조 관련)

부과대상	부과금액		
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자			
1. 1kg미만	1만원		
2. 1kg이상 100kg미만	3만원		
3. 100kg이상 1톤 미만	5만원		
4. 1톤 초과 매톤 마다	5만원		
나.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종류·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			
1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	30만원	60만원	100만원
2. 다량 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	1만원	3만원	5만원
다.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			
1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	30만원	60만원	100만원
2. 다량 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	2만원	5만원	10만원

-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“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”에 의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.
-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3차 이상 위반시는 3차 위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.
- “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”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유사한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.
- 구청장은 “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”에 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